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26
----------	-------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의자 : 서영교 · 신동근 · 전재수  
정세균 · 신창현 · 송영길  
박찬대 · 박경미 · 김해영  
조승래 · 민홍철 · 김철민  
최인호 · 도종환 · 이인영  
박용진 · 임종성 · 윤준호  
송옥주 · 박정 · 전현희  
이훈 · 박홍근 · 심기준  
이석현 · 원혜영 · 김영춘  
신경민 · 노웅래 · 홍영표  
김민기 · 어기구 · 심재권  
여영국 · 윤관석 · 김태년  
맹성규 · 금태섭 · 전해철  
임재훈 · 전혜숙 · 김종민  
위성곤 · 김병기 · 서형수  
박광온 · 윤일규 · 김영진  
홍익표 · 김상희 · 기동민  
이철희 · 박지원 · 강훈식  
한정애 · 남인순 · 권미혁  
의원(5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므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준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14조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부담해오던 금액을 교육비특

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초·중등교육법」</u>  <u>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u>  <u>상교육을 위하여 국가예산이</u>  <u>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u>  <u>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u>  <u>할 수 있다.</u></p>
<u>&lt;신 설&gt;</u>	<p><u>제14조(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u>  <u>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u>  <u>「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u>  <u>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u>  <u>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u>  <u>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u>  <u>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u>  <u>다.</u></p> <p><u>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u>  <u>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u>  <u>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u>  <u>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u>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u>  <u>조에 따른 교육급여, 「한부모</u>  <u>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u></p>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부담해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